2016 서른 다섯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

천주교 인권위원회

목차

여는 말 - 2016인권주일 자료집을 준비하며 4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6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8

강론글1. 지진과 원전
이유진 / 녹색당 탈핵특위위원장 15

강론글2.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남은 과제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19

강론글3.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할 8가지 이유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25

강론글4. 노동자는 죽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35

강론글5. 혐오표현, 왜 인권침해인가?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39

2016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43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45

발행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인 김형태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전화 02)777-0641



2016 인권주일 자료집을 준비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실 때쯤에는 촛불을 든 백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권력에 꼭대기에 닿았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시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처럼 국민들의 바람도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백만 촛불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서 있었든, 마음으로 함께 했든,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한곳으로 쏠리고 있을 때, 인권 운동은 고통 받으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이라는 거대한 파도 소리에 자칫 묻혀 버릴 수도 있는 목소리들을 듣고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서른다섯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강론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진과 핵발전소〉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에너지 전문연구자인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이, 〈세월호 참사〉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부대〉 설치가 얼마나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제언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모임 박석진 운영위원장이, 구의역 안전사고나 남양주역 공사현장 폭발사고처럼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들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대표가,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이 왜 심각한 인권침해인가에 대해서는 법사회학자이자,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가 소중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권주일 강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곁에 서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머뭇거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불의하고 부당한 정치권력과 자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을 열며 다짐과 약속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흔들림 없이 꼭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며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호소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 생명과 인권의 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걸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서른다섯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드림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관심에 가톨릭교회가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사제, 수도자, 자매, 형제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인권위원회로 시작하여, 1993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독립 출범하여 올해로 활동 28년, 창립 23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사건들의 진상규명활동과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버렸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여 년의 노력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조작과 고문으로 만들어진 간첩 사건들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악법들의 폐지와 개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증거 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검찰, 경찰, 구금시설 등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오랜 시간 끈질기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온갖 차별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폭력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집을 짓기 위해 집을 부수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환상에 밀려 점점 도시의 변두리로 쫓겨 가는 서민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살며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생활인들의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감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교만을 접어두고,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하며 싸우고 함께 비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국가폭력 피해의 상징이 되어 버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시멘트와 항공모함에게 바다와 구럼비 바위를 빼앗기고 감귤 농장 대신 경찰서와 구치소를 오가야 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살려고 올라간 망루에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가족들의 시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용산 참사 유족들, 평생을 일구어 온 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76만 5천 볼트 송전탑을 막아서다가 경찰들에 사지가 들려 내쫓기는 노구의 밀양 주민들, 유례없는 참사로 304명을 잃고도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국가공권력의 폭력으로 쓰러지고 돌아가셨지만 사과한마디 받지 못하신 채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시도로 장례조차 치루지 못했던 백남기 어르신의 가족들이 바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곁을 지켜야 할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입니다.

아시아 가톨릭의 정의평화단체들과의 연대와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하고 체험 하게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지구적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사형폐지 활동가들과 살인피해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300여건의 무료인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 진행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꿋꿋이 이겨내며,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낌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유현석 변호사님과 이돈명 변호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지난 7년간 70여건의 중요한 공익소송들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무지개농성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이돈명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함께 보다 성숙하고 공신력 있는 공익인권단체로서의 외형적 조건들도 갖추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4년 10월 창립총회를 갖고, 2005년 6월 1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하여 같은 달 16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자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부금을 낸 후원회원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후원회원 분들이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연말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02-777-0641) 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가야 할 길,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습을 지켜 내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공익소송팀

월요 법률상담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명동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교우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든 공익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 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ㅇ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피해자 42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ㅇ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폭행한 교도관 1심 유죄 판결

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교도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월 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역수형자 이아무개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2011년 6월 6일 서울구치소 A관구 기결팀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우고 바닥에 앉아 있는 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온몸을 밟아 상처를 입혔습니다. 최 판사는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의 직책,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ㅇ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ㅇ 철도파업 개인정보 경찰 제공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파업 수사를 핑계로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건보공단 보유정보는 병명 뿐 아니라 병원명, 방문일시 등 노출될 경우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별도로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법원을 비롯하여 견제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올해 6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획연대사업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기획 및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돈명 변호사님 추모 5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 발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친목 문화모임 ‘두부한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6기 사법연수원생 5명이 2015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무료법률상담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강래혁, 남승한, 김종근, 박경용, 서선영, 김현성, 이호중 위원이 참여하여 인권강의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사업팀

2015년 인권주일 강론자료 배포와 강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2곳의 본당과 수도회에서 인권주일 2차 헌금을 후원해 주셨고, 춘천교구 강촌성당과, 서울대교구 신정동성당에 강론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소식지 편집팀과 함께 기획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식지인 〈교회와 인권〉에 교회 쇄신 칼럼을 5회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고를 통해 사제, 수도자, 평신도, 활동가가 함께 한국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며 교회 쇄신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사회교리 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권정책팀

2014, 2015년에 이어 3년째, 수도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친 인권 연속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와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가 공동주최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과 인권을 연결시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책무에 대해 토론하는 커리큘럼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일시	주제	강사	초대 손님	사회
10/21	[인권, 여성의 이야기] 여성으로부터 인류로, 왜 그것이 모든 이의 권리인지 말하기 “내가하는 일은 남성이 하는 일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거부합니다.”	손희정 연구활동가 (여성이론연구소 운영위원)	이지원 (강남역 10번출구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김덕진
10/28	[인권, 성소수자의 이야기] 우리는 성소수자들과 이전에도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존중받아야 한다”	임보라 목사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홍성수
11/4	[인권, 장애인의 이야기] 장애인의 권리 찾기, 어디까지 왔나요? “병자와 장애인을 배척하는 사람은 생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환영(幻影) 속에서 사는 것”	박옥순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호중
11/11	[인권, 이주민의 이야기]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공격”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섹알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황필규
11/18	[인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프란치스코 교종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길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애’를 재발견하는 것”	나승구 신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이은정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회원행사인 4.16 바자회와 문화행사 등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4.16 운동을 펼쳐가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와 참사 900일 추모집회, 미수습자들을 기다리는 팽목항 기다림 문화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활동 종료 이후에도 세월호참사 국민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과 함께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01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제안되어, 선언인 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세월호 참사 2주기 범국민 추모문화제에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공식채택을 앞두고 100회가 넘는 풀뿌리 토론과 2차례의 전체 토론회를 거쳐 선언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해설서, 포스터, 스티커, 책갈피 등 다양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4.16씨네토크, 만인낭독 프로젝트-소리내 4.16인권선언, 노란리본 셀카 릴레이 캠페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을 통해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2주기까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4.16 인권선언인 운동의 전반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상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뤄짐에 따라 팽목항과 동거차도에서 인양작업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기다림의 버스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말 최근 세월호 선체 선수들기가 성공하였고, 선미 리프트 설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총 8개 중 1개만을 설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연내 인양 완료를 호언장담했던 정부는 계속 말을 바꾸며, 사실상 2016년 안에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온 국민의 분노가 정권 퇴진으로 모아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대로 떨어진 상황을 맞아 전국의 1500여개 단체들이 모인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출범했습니다. 10월 29일 열린 박근혜 퇴진 1차 비상국민행동에 2만여명, 11월 5일 열린 2차 비상국민행동에는 20만여명, 11월 12일 3차 비상국민행동에는 100여만명이 모여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퇴진행동’은 조직을 정비하고 매주 대규모 퇴진 촉구 집회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신지 317일만에 운명하신 직후,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재편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상황실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매일 오후 4시 생명평화미사, 저녁 7시 촛불집회, 밤 9시 상황실 회의 등을 개최하며 검경의 강제부검시도을 막아내고 국회 특검법 발의, 시국선언, 주말 추모대회,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사망진단서와 빨간우의 논란 불식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0월 25일 부검영장이 만료되고 국회 야 3당 원내대표의 특검과 책임자처벌, 농업안정 정책 추진 등을 포함한 합의문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족 방문과 특검 약속 등이 이어졌고 장례를 결정하였습니다. 유족들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생명과 평화 일꾼 백남기 농민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4일 추모의 밤, 11월 5일 장례미사, 노제, 영결식 그리고 고향인 전남 보성 빈소 마련, 6일 보성역 노제, 광주 금남로 노제, 망월동 민주화묘역 안장식 등의 일정을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장례일정에는 1만여명의 장례위원이 함께했고 5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장례미사는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 공동집전으로 열렸으며 5일 영결식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야 3당 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도사가 이어졌고 6일 저녁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에서의 안장식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특검의 국회 통과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 투쟁백서 작업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사형제도폐지운동

2016년 사형제도폐지를 위해 진행할 사업은 △호베르 바뗑데흐 프랑스 전 법무부 장관 저서 번역 출간 및 초청 △사형폐지 중고등학생용 자료 제작 △사형폐지 콘서트 △사형수 및 살인피해가족 지원 △위원연수 △세미나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형폐지운동단위 전체 워크숍을 통해 하반기 사형제도폐지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 로비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고, 워크숍이 끝난 후 유인태 전의원을 초대하여 사형폐지운동에 오랜 세월 기여한 것에 대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는 국회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토론회를 국회의원 김부겸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나누었고 서면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세계사형반대의 날 행사와 사형제도폐지 이야기콘서트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5회 이돈명 변호사 추모식 및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2016년 1월 7일 이돈명 변호사님 기일에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소성당에서 이돈명 변호사님 5주기 추모미사와 함께 5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돈명 변호사님 추모행사는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함세웅 신부님 집전의 추모미사와 한택근 민변 회장 등이 추모사를 한 5주기 추모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행사와 함께 열린 5회 이돈명인권상은 백승헌 변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ㅇ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5년 12월 1일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강정마을과 해군과의 갈등은 증폭되어,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전국대책위는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군사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기어코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된다면,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 될 것이며, 그 첫걸음인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2월 26일에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 해군참모총장 등이 준공식에 참여하였고 이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강정마을회에서는 마을을 지킬 장승을 세우고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6월 4일에는 서울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다시 시작되는 투쟁을 위한 후원주점〉을 진행하였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2016 강정 생명평화대행진〉이 연인원 3천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ㅇ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

해군은 3월, 강정주민과 활동가 등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 책임을 이유로 34억 5천 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철회 요구를 해왔습니다. 구상권 대응과 관련하여 강정마을회는 4월 10일 긴급마을총회를 개최하였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여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를 단장으로 2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법률적 대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습니다. 전국대책회의는 10월 26일에 공동논평을 내고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천주교연대

5월 7일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강정주민, 지킴이, 천주교연대 현장팀 등이 주축이 되어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을 막고 봉헌되던 거리미사를 마지막으로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평화미사는 공사장 맞은편의 미사천막에서 매일 11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 후 12시경 진행되던 평화의 인간띠 잇기도 해군기지 정문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제안으로 제주교구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그리고 예수회 한국관구 등이 공동주최하여 2014년 9월에 시작된, '강정평화 컨퍼런스'는 올해 3회째를 맞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생명평화로 고치가게마씸(함께 갑시다)"이라는 제목으로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와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통신자료 대응

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2015년 최원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한해 천만 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입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는 캠페인 진행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에 대해 통신자료제공허가를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해당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유, 제공요청기관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2015년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진 사건과 관련하여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독일의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영국의 샘 호크(Sam Hawke,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가 참가했습니다. 29일에는 '미디어카페 후'에서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해 영국에서 살수차가 도입되는 것을 무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대포에 대해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도입을 저지한 영국의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10월 19일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 행사장에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 故 노수석, 故 전용철 사례를 통해 본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의 현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과거 국가폭력의 책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故 노수석 사례(이덕우 변호사, 당시 노수석 유가족 대리인)와 故 전용철 사례(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당시 전용철 범대위 진상조사위원)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인권운동장

2016년 새해 첫 인권운동장에서 정세전망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고 이후 후속모임을 통해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논의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 평화,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4.13 총선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만들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올리고 가이드는 차별/빈곤/지역개발/안보/공공장소/참정권의 영역으로 나누어 선거와 정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후보를 뽑거나 뽑지 말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맞선 인권의 연대기, '있다-잇다'를 제목으로 반올림,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 밀양/강정과 유성 노동자들이 만나 인터뷰를 하고 정리한 글을 프레시안에 기고하였습니다. 6월에는 "평등해야 안전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내놓은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운동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7-8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힘 있게 보내보자는 컨셉의 "또 뭐해영~ 오글오글(너뿐이야)+으샤으샤(힘내보자) 파티"가 다양한 영역의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힘을 북돋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8월에는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와 인권단체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과와 진상조사 내용을 설명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운동사회 내부의 권위주의, 조직의 사유화, 노동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단체 입장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1월 인권운동장은 “두고 볼 순 없다, 박근혜가 임기 마치는 꼴을” 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긴급하게 제안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가 참여하여,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논의하였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우리의 말’을 모아서 전하는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또한 매년 세계인권선언일 즈음에 만들어졌던 프로젝트 〈그날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그날들〉과 함께 “인권 10대 뉴스”를 부활시켜 대중적인 캠페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_사진 반올림

교회와 인권

강론글 1

지진과 원전

이유진(녹색당 탈핵특위위원장)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되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대표하거나 55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에 발효되는데, 올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인도 등이 비준을 하면서 요건을 1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데 8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파리협정의 발효는 각국이 기후변화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환경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 인류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안으로 원전건설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국도 발효 하루 전 국회비준을 했지만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원전확대'에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결정할 때 감축 목표량이 높아질수록 원전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원전'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대안론'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한국에서만은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원전 13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졸속표결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승인했다.

원전사고 요인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지진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쓰나미 영향보다는 2012년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 사건과 같이 부실점검, 노후나 비리로 인한 부품결함, 작업자의 실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견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 규모 5.0 지진, 9월 12일 경주의 규모 5.1, 5.8 지진, 19일 규모 4.5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진은 한국에서 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특히 경주 지진은 11월 3일까지 총 514회에 달하는 여진을 일으키고 있어서 지진의 위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앙지인 경주에는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처분장 등 원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나아가 부산과 울산에도 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1기의 원전이 시험가동중이다.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을 몰아서 지은 것이다.

내륙성 경주지진의 원전 위험성을 경고하러 온 히로세 다카시

지난 10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측했던 일본의 반핵평화활동가 히로세 다카시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서울, 울산, 부산을 순회하며 '지진에 대비한 가장 안전한 대책은 탈핵'이라며 열띤 강연을 열었다. 그는 경주지진은 내륙형 직하형이라 원전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다.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는 강했지만 130㎞ 떨어진 태평양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경주지진은 진앙지가 바로 경주의 땅 밑이었다. 원전이 직하지진에 직격탄을 맞으면 내진설계와 상관없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은 0.2g(중력가속도), 새로 짓는 원전의 경우 0.3g이다. 히로세 다카시는 이를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했다(일본 내진 기준 2.34g).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만 아니라 지구 전체 지각을 비틀어놓은 상황에서 이 일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의 지진에 대해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을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경주지진은 하늘이 주는 경고"

경주지진은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히로세 다카시는 경주지진은 어쩌면 "하늘이 주는 경고"라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국내지진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탈핵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http://www.khnp.c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월성 1, 2호기는 가동 중이라고 나온다. 지진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지금도 여진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전가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건 도박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일대 지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통해 양산단층대를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은 원자력계의 반대로 발간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정부와 원자력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막을 수 있는 몇 번의 경고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그 경고를 무시해왔고,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다.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셈이다.

경상북도를 '원전밭'으로 도지사의 원전클러스터 공약

온 나라가 최순실 사건으로 마비 상태이다. 이런 엉망인 정치 때문에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주지진과 원전의 위험성'을 다룰 정치도 작동하고 있지 않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왜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원전이 이다지도 많이 건설되었을까? 이것도 정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 3선 도지사인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원전 클러스터'였

다. 경상북도에 원전 관련 시설을 유치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해왔고, 그 결과 경상북도에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울진 10기, 월성 6기, 영덕 2기 등 모두 1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다. 김관용 도지사의 원전유치 정책은 이제 경상북도 도민들을 원전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 국민을 원전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정치를 바꿔야 안전해진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주에서 운영 중인 원전을 모두 멈춰야 한다. 원전 마피아들에게 포위되어 대책 없이 원전건설을 승인하는 정치가 아니라 탈핵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진다. 탈핵 운동진영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 명이라도 더 서명하고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자. 지금 상황에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옛날 광부들이 갱도에서 작업할 때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산화탄소가 부족을 알게 된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 지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카나리아가 되어야 한다.

교회와 인권

강론글 2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의 남은 과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다시 부상한 '박근혜 7시간' 의혹

'박근혜-최순실'의 비선라인에 의한 한정파괴범죄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헌법 밖의 사설 정부를 운영한 최순실의 검은 그림자는 세월호 참사에도 드리워져 있는 듯하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부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방은 묘연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대면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4월 16일 오후 5시 1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자리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거기에 경찰특공대라든가 구조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상자는?" 등의 발언을 한다. 대통령이 구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실시간으로 긴박하게 대응하였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다. 당시 청와대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7시간의 의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7시간 동안 피부 리프팅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되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잠시 지난 세월을 더듬어보자. 2014년 11월 650만여 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서명으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로 약칭)가 꾸려졌다. 세월호특별법은 1년 6개월의 조사활동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금년 6월 30일 자로 세월호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고, 9월 30일 자로 세월호특조위의 문을 닫아버렸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 2015년 5월이고 시행령에 따라 조사관들을 채용한 것이 2015년 7월 말,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급된 것이 2015년 8월 중순이다.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2015년 8월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우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서 마지못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출범시켰지만,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무리한 법 해석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켰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숱한 방해공작과 강제종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조위는 몇몇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6월 27일 특조위는 첫 번째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들어갈 철근 278톤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세월호참사 직후에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자재의 운송은 부산-제주 항로를 이용하였다고 말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왜 세월호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의 연관성을 숨기려 했을까. 세월호의 도입과 운항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군기지 건설 일정이 세월호가 과적을 일삼는 데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 해군과 국정원은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등등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SNS상의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진 시기에 세월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트윗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계정들은 '트윗덱'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대량의 리트윗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2012년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위해 사용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언론사들의 추가 취재에 의하면, 악의적인 트윗글을 생산하여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계정의 주인은 보수단체 간부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십알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십알단은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 연계해서 댓글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트윗 그룹이다.

아쉽게도 세월호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참사의 진실에 관해 작은 조각 몇 개를 밝혀내는 데 그쳤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처럼…….

'진실규명'의 사회적 의미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떤 작업일까. 그것은 단순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다거나 세간의 관심사인 몇몇 사실(fact)을 확인하는 수준의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들을 놓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와 정의의 기준에 입각해서 사건의 실체를 사회적·역사적으로 '규정짓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 작업은 분명 '이윤보다 생명·안전'이라는 인권적 가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성찰에 따라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앞으로 어떤 사회적 개혁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화물차의 과적이 위험하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는 화물차 과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는 화물차의 과적이 화물차 운전기사의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은 과적하지 않겠다고 하면 선주 회사에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화물차 기사들은 누구보다 화물 과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과적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물차의 과적이 선주들의 이윤추구와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문제를 성찰하게 되면 화물차 과적에 관한 대책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과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규명이란, 누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나 관행을 만들어낸 자가 누구인지, 그 계통을 추적하는 작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작업은 역사적·사회적 사건으로서 참사의 스토리를 쓰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결이 다른 다양한 사회적 사실(팩트)을 포괄하는 방대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화물 과적과 고박부실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행태를 저지른 선장이나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과오라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관행으로 정착시킨 사회구조적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화물 과적을 일삼을 수 있게끔 방관·묵인하는데 일조한 정부정책 등 서로 차원이 다른 '다양한 겹'의 진실을 찾아내고 성찰하는 과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의혹과 과제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과제를 다 열거하려면 책 한 권 분량은 족히 될 것이다. 지면 사정상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 침몰원인조차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밝힌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선원의 조타 미숙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였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리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맹골수도에서 조타를 담당했던 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실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나 프로펠러의 오작동 등 조타 실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급선회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해경의 구조과정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참사 당일 해경이 골든타임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해경이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고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해경의 초기 대응 및 구조와 수색과정은 석연치 않은 의혹과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123정은 이동 중에 세월호와 아무런 교신을 하지 않았다.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123정장은 이동 중에 세월호와 교신하여 세월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배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123정은 한차례 세월호를 불러보고 응답이 없자 이후에는 교신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참사 당일 9시 26분경에는 세월호가 123정을 2회 호출하였으나, 이번에는 123정 승무원들이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어선들은 승객이 많은 세월호 선미로 접근하여 승객을 구조하고 있었는데도 유독 해경 123정은 조타실로 다가가서 선원들을 먼저 탈출시켰다. 123정은 왜 승객들에 대한 하선 조치나 승조원들의 선내진입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왜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그 과정에서 해경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 외에도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목포해경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정도 조사한 후에 해경 대원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 것, 선원들을 호텔에 함께 묵게 한 것도 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세월호의 운항과 침몰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포착되었다. 2014년 6월 24일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노트북에서 복원한 파일 중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왔다. 그 파일에는 세월호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등 세월호의 영업에 관하여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정원이 세월호의 운항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건에 등장하는 지시사항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위한 예비사전점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국가보호장비 지정과 관련한 보안점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정원의 답변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그뿐만 아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의하면, 세월호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월호특조위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의 기회에 세월호를 타고 제주까지 함께 가서 접대를 받았고, 그 외에도 인천 지역에서 국정원 직원은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수시로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진실규명의 험난한 길을 힘차게 헤쳐가야 한다

아직도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세월호가 과적한 채로 운항했다는 것은 밝혀진 팩트이다. 그러나 유가족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과적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출항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진실'이다. 해경이 골든타임에 신속한 구조체계를 작동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모른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도입과정에서부터 모종의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적과 조각을 엮어 국정원 개입의 진실에 접근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근혜의 7시간 의혹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으로 선령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정책, 안전 및 구조업무의 민간이양(민영화), 감독기관과 기업의 민관유착 문제 등이 언론,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객선 선령 제한이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최장 30년으로 완화되었고, 2011년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의 개정으로 노후선박의 특별점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의 명목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기준을 완화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규제완화정책이나 민영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때 기업(자본)과 정부(국가) 사이의 유착구조가 어떠했는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등등, 보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들은 좀 더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팩트들의 관련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스토리로 구성하는 '관점'과 그 관점에 내재한 '가치'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정책이나 민영화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로,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오로지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비리 차원으로 치환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진실규명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의 정책 기조 속에 이미 굳건하게 구축된 자본과 국가권력의 동맹에 맞서는 작업이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 공권력은 '사회안전'을 빙자하여 시장의 보호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공간인 시민사회 영역을 파괴하는 데 주력해 왔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사회안전은 결국 '시장'의 안전, 즉 기업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규제완화정책과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민중들의 노동·생활현장의 안전문제를 기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의 논리에 복속시켜 버렸다. 작업장의 안전 문제가 비용절감,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하여 기업의 자율과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들이 사적으로 감수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하향조정되어 왔다. 자본은 이렇게 증대된 위험마저 상품화한다.

안전한 삶은 '인간다운 삶', '존엄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진실규명의 과제는 안전한 삶의 권리를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비용절감과 이윤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적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생활·노동현장에서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재해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기업과 시민의 사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의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미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방해공작에서 목도하였듯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또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권력집단의 불의에 맞서는 시민저항운동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진실규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정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세월호특조위는 강제종료 당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힘찬 발걸음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와 인권

강론글 3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국방부 사드 배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과 종교단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투쟁의 움직임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국방부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사드란?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는 적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는 일련의 체계와 작전을 말한다. MD는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 식별, 추적하는 탐지체계(위성, 레이더 등),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요격명령을 내리는 지휘통제체계, 비행단계별로 적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체계로 구성된다. 절대 방패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욕망에서 탄생한 MD는 단순히 방어용 무기체계가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핵으로 선제공격한 후 중국이나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군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가 상호 간 군사적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유럽에서, 중국을 겨냥해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지역에서 그리고 중동지역에까지 전 지구적 차원의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에 따라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단계로 구분할 때 종말단계의 상층 고도 (40~150km)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이다. 요격 방식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방식(hit to kill)을 채용하고 있으며, 1개의 사드 포대는 작전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1개 포대당 도입 비용은 2조 원에 달한다.

2.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철회되어야 할 여덟 가지 이유

첫 번째. 사드는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체계

국방부는 사드가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요격시험에 모두 성공하여 3,000km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체계이며 미 국방부 자체 판단으로도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으며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 (미 국방부 작전시험 평가국(DOT&E), 연례 보고서, 20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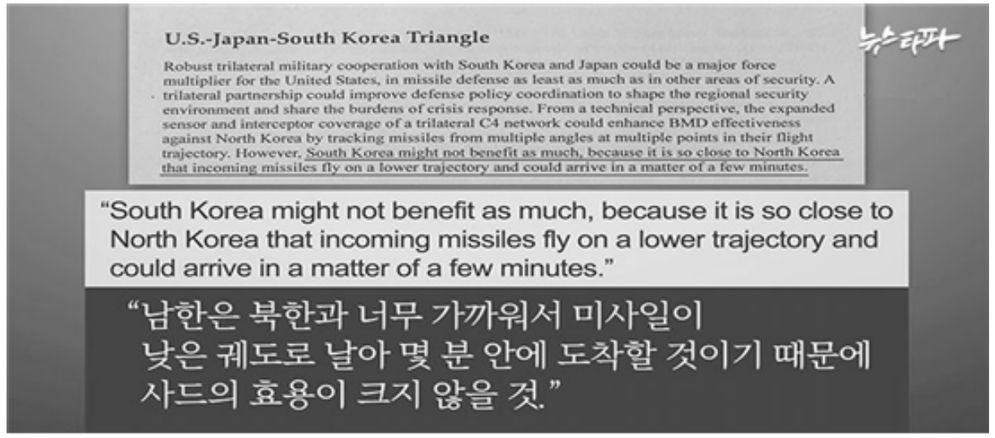
특히, 요격 성공률과 관련해서도 사드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기상 상황 등 요격 성공을 위한

주요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요격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2016년 4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괌에 배치된 사드 역시 제때 요격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드의 방어력 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사드는 아직 그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체계이다.

두 번째.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지 못하는 무기체계

국방부는 사드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으므로 사드 배치를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 간 종심 거리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3~5분 이내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을 이동하거나 발사각도를 조정하여 사드의 요격고도를 피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짜 탄두(decoy)기술을 활용하거나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의 방어능력은 무력화된다. 이 같은 사실은 미 의회와 국방부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2013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 중에서


한겨레

2015년 07월 06일 월요일 001면 종합

미 전직 고위관리 "사드, 북 미사일 요격 어렵다" 인정

코일 전 국방부 신무기 담당국장
포스톨 MIT 교수 분석에 동의
"한반도 배치땐 군비경쟁 촉발"

미국 국방부에서 신무기의 성능 시험을 책임졌던 전직 고위 관리가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사드)의 요격 성능에 의문을 제기한 미국 학자들과 〈한겨레〉의 분석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 및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6면

필립 코일 전 미국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대(MIT) 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드 요격 시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코일 전 국장에게 제공했다.

미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장은 국방부 신무기의 대량 생산과 구매를 결정하기 전 그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최종 평가해 국방장관과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 미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하기 때문에 국방부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미 국립 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부소장 출신인 코일 전 국장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최장 기간 국장을 맡았다.

코일 전 국장은 미사일방어청(MDA)이 홈차례의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시험들로 북한의 커드 미사일과 다른 미사일들의 성능을 판단하지 못한다"며 "북한 미사일들이 공중에

북한이 사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이나 3,000km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 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가정도 비현실적이다. 기본적으로 이 무기들은 한반도 전체의 길이가 1,000km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남한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며 국방부의 주장대로 고각 발사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비행시간이 길어지며 타격정확도가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조차도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7/19~20,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시 답변 내용 중)

1차 미사일 요격이 실패하면 다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다층방어개념은 사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방어(비행시간 약 30여 분)처럼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탄도미사일의 비행 변화가 적은 중간단계 위주의 미 본토 방어에서나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3~5분밖에 안 되는데 이를 다층 방어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다.

세 번째. 입증되지 않은 사드레이더 전자파 무해성

국방부는 사드레이더 운용 시, 지상 안전거리 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드레이더 빔을 5° 이상 위쪽으로 발사하므로 그 아래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2002년 12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에서 "사드 레이더 위험지역은 레이더 전방과 측면 등 약 400m"라고 적시하고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나 야생동물들이 이 위험지역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 육군 교범은 절대 출입금지구역 외에도 3.6km의 통제되지 않은 인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5.5km 이내에서는 전자장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항공기의 운항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주장은 6분간의 단기간 전자파 노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장기간 전자파의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국방부가 진행한 실험은 핵심내용인 전자파 출력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미 육군이 괌에 사드기지를 배치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100m 이내에서 전자파로 인해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강도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레이더의 빔이 5° 이상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그 아래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레이더 빔의 방사성(주변으로 흩어지는 효과)을 간과한 오류가 있다. 실제 2014년 사드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토의 주민들도 발전기 소음과 전자파에 의한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는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미국 텍사스의 경우 사막이고, 일본과 괌은 해안으로 레이더 전방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데 반해 한국만이 유일하게 레이더 인접한 전방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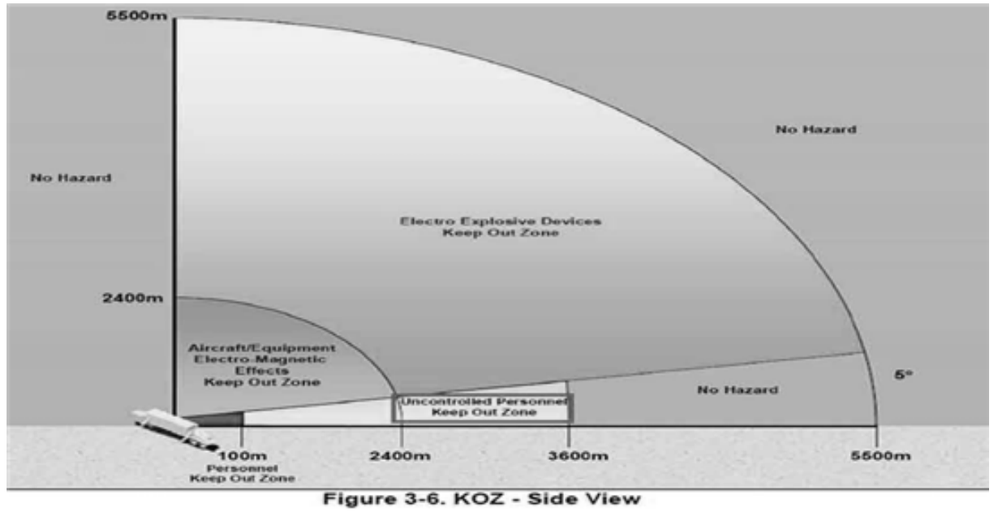


Figure 3-6. KOZ - Side View

2012년 발간된 미 육군본부교범에 적시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 반경 '접근금지구역(KOZ)' 도표-사드레이더 빔의 5° 발사각 아래 지상 3.6km까지를 통제되지 않은 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MD에의 본격적인 참여를 초래

국방부는 미국 MD 참여는 미사일 방어협력 MOU 체결 및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연습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하는 데 반해 한미는 정보공유 등 낮은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으므로 사드 한국 배치가 곧 미국 MD 참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한국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 작전통제소에 연동되어 운용되므로 미국 MD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드레이더의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종말단계로만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MD에 각국이 참여하는 방식은 그 형태와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미 국방부의 캐슬린 힉스 정책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의) MD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차관보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직전인 2016년 6월, "한국과 협의하는 사드는 MD체제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할 사드 레이더는 그 제작사인 미국의 군수업체 레이시온사가 밝히고 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결국,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MD의 핵심체계인 사드레이더를 통해 미국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될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미국 측 작전통제소에 연동되어 운용되므로 미국 MD와 무관하다 주장하나 국방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시피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와 한국군의 작전통제소는 올해 안에 실시간 연동체계(링크 16)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형 MD와 미국 MD가 통합 운용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결국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미는 동일한 정보체계 안에 흡수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 지휘 체계상 한국에 배치된 사드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는 미 본토의 전략사령부로 보고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 속에서 하나의 부속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간 탄도탄 정보공유체계도

-한미는 2016년까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인 링크-16을 완성할 계획임-

2014년 말, 기습적으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최근 한일이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되면 한미일간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실시간 정보공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최근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한미일이 정보공유 수준으로 넘어 작전·훈련에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MD 체계의 구축은 MD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사드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km인 종말 모드(사격통제모드)와 탐지거리가 최대 3,000~4,000km에 달하는 전진배치 모드(조기경보모드)가 있다. 2011년 2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레이더의 두 모드는 8시간 이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운용주체는 주한미군이며 주한미군이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해 운용할 경우 한국군은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섯 번째.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가 비준과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간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드 배치부지의 제공 등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관련해, 한미 양국은 이미 2002년, 2004년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해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체결할 당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국회의 비준과 동의과정을 거친 전례가 있다.

여섯 번째.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중대한 위반

〈한미 군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주요 과정〉

· 2016년 2월 7일, 한미 군 당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
· 2016년 6월 17일, 국방부, 사드 배치지역 미결정 상태이며 배치 시기도 미정,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2016년 7월 5일, 국방부, 사드 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
· 2016년 7월 8일, 한미합동실무단, 주한미군 사드 배치 전격 발표
· 2016년 7월 13일, 한미합동실무단, 사드 배치예정지로 경북 성주지역 성산포대 발표
· 2016년 9월 30일, 국방부, 사드 배치예정지 경북 성주지역 롯데골프장으로 변경

이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미 군 당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주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이는 2014년 일본 교가미사키 지역에 주일미군의 사드레이더부대가 배치될 당시 일본 정부가 2차례의 사전 환경조사와 15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과 대비되며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경우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이다.



2016년 7월 15일자 JTBC뉴스 보도장면 캡쳐사진

보다 본질적으로 한미 군 당국의 일방적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사드 배치가 한국에 주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행위이다. 더욱이, 성산포대가 사 배치의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최근 성주 롯데골프장을 새로운 부지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초래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이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한국 측이 부담할 비용은 없으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 시 한국은 사드 배치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최종 배치지역으로 발표된 성주 롯데골프장의 경우 최소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국방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바와 같이 수도권 군부대부지와 대토 형식으로 미군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이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설사, 미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고 이를 한국에 배치될 사드 운용비로 사용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해두었다가 자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2사단의 기지이전 비용 등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다.

여덟 번째. 사드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한 행위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러의 반응〉

· 중국
-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즉각 사드 배치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 (7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며, (한미는)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될 것" (7월 9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중국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월 9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러시아
- "(한미의 사드 배치는) 아태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초래할 것"(7월 8일, 러시아 외무부 성명)
- "러시아는 이후 군사계획에서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 결정을 고려할 것이며,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미사일부대 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것" (7월 8일,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한국의 미국 MD 참여 문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짚어져야 할 문제는 주변국들의 반응 특히 중국의 입장과 태도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MD 체계 구축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대미 핵 억지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한국이 미국 MD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강력한 반대 의사의 표명은 물론 최근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도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예견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MD 체계가 확장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신무기 개발과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로 인해 우리의 평화와 경제적 이익이 중대한 타격을 입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적 경험은 적대적 대북정책과 그 어떤 신무기의 도입 또는 군비증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북한은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어 왔다. 살펴본 대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기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어렵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긴장과 위기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인권

강론글 4

노동자는 죽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올해 1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었고, 그중 4명이 실명을 했다. 올해 10월에 2명의 실명 노동자가 또 확인되었다. 5월 28일, 열아홉 살 노동자가 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6월 12일 한전의 비정규직 전기원이 소위 활선공법(전기를 끊지 않고 공사하는 방법)으로 감전사했다. 계속된 전기원 죽음의 행렬 중 하나이다. 6월 23일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숨졌다. 이후에도 설치 수리 기사들의 추락 사망사고는 계속되었다. 9월 경주지진의 여파로 연착한 고속열차가, 열차 연착 정보를 모른 채 철로를 보수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치었다. 그 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다. 10월 12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12번째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올해 일어난 죽음들이다.

한해에 무려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다. 부끄럽지만 OECD에서 압도적인 1위이다. 노동자는 죽기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이렇게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2015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95%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들은 위험한 업무에 안전장치를 하는 대신, 그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하청업체에 넘기면 안전장치 비용도 절감하고 사업주로서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유해·위험업무는 하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메탄올로 실명한 노동자들도 삼성 3차 하청업체의 파견노동자였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거나 철로를 유지·보수하던 노동자들도 하청노동자였으며, 전기원, 에어컨 수리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규제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노동자의 생명을 무시한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휴업 4일 이상(현행 3일)의 산재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산재 보고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다. 산재 은폐를 독려한 것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업종을 제외시켜서 산재 예방을 방해했다.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되었지만 규제 완화는 계속된다. 최근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급의 안전교육시간을 줄이고 도급신고를 면제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할 경우 원청은 거의 책임지지 않았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난 5년간 원청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최종 처분을 살펴보면,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불기소·기소유예 43건, 벌금형 106건, 혐의없음 38건이었다. 거의 처벌받지 않는 셈이다. 처벌 수위도 너무 낮다. 2008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 57명 작업자 중 40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원청은 벌금 2,000만 원, 이 회사의 사장도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2012년 8명이 사망한 청주 LG화학 다이옥신 폭발사고의 경우에도 하청회사는 벌금 3,000만 원, 현장소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원청 대표는 무혐의였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이렇게 싸니 기업들이 애써서 안전장치를 하거나 안전관리를 할 리가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노동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존 때문에 일을 한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1인 작업이 위험한 줄 알았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일하지 못하면 원청 회사에 벌금을 물어야 했기에 홀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노동자에게는 1인 작업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이 작업하는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직업병으로 죽어갔다. 메탄올을 취급하던 노동자들은 '알코올'이라고만 알았지 그것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위험물질이라는 것을 알 도리가 없었다. 철도 선로를 유지 보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열차 연착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알 권리,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기업의 탐욕이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니,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반도체 공장이 아직도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2015년 무려 8명의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현대중공업이 산재 보험료를 170억 원이나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업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이 아낀 '비용'은 결국 노동자들의 목숨값이었고, 그것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왔다. 사회는 더 위험해지고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고통의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가.

노동자들만 이런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인해 똑똑히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결국 시민들의 생명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이다. 기업들은 과적을 마음대로 하고 정부는 안전관리에 소홀하며, 기업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검사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노동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죽는다. 2012년 구미의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었다.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장 일대의 주민과 동·식물들에 피해를 주었으며, 동네 주민들은 모두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다. 기업의 이윤논리를 규제하지 않으면 이제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과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생명의 존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선,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절대로 외주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위험을 밖으로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원청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을 견제하지 못하면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와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과 그 기업의 최고책임자, 그리고 그와 결탁한 공무원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변화를 통해 기업에 생명존중을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 개인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한 일인지 노동자 개인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위험 정보를 시민사회와 지역에 알리는 일도 개인으로는 어렵다. 노동자들이 집단적 힘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이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주권자로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불매운동 등으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일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을 더이상 용인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교회와 이권

강론글 5

혐오표현, 왜 인권침해인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 이후 새롭게 떠오른 인권문제 중 하나가 바로 혐오표현이다.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공격적 혐오가 발단이 되었고, 아예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를 주된 장난감으로 삼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런데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혐오표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바른말 사용하기'로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혐오표현의 해악을 간과하고 부당하게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흐름도 있다. 그래서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지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혐오표현'(hate speech)은 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은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소수자는 숫자가 적거나 실질적으로 권력이 열세이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보통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는 차별사유로 성,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장애, 연령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집단, 즉 여성, 소수민족, 성적소수자, 장애인 등이 바로 소수자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때 혐오는 인종주의나 호모포비아와 같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관념이다. 단순히 감정적인 거부감이나 휘발성이 있는 감정과 구분되는 단단한 지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러한 감정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할 때 혐오표현으로서 문제가 된다. 보통, 소수자를 모욕 · 조롱 · 위협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셋째, 혐오표현은 선동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직접 해악을 주기도 하지만, 청중들로 하여금 소수자를 차별·적대·폭력 하자고 선동하기도 한다. 이로써 소수자에 대한 해악이 더욱 강력해지고, 확장성을 갖게 된다.

혐오표현의 해악

우리가 혐오표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혐오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소수자를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해악〉이라는 책을 쓴 월드론(Jeremy Waldron)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public good)을 붕괴시킨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어떤 학교에서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비하적, 모욕적 발언이 만연해 있다면, 그 학생은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성소수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발화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정상적으로 일하고 돈 벌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의 심리적 해악으로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자신감 · 자부심 상실, 자책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혐오표현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혐오표현을 "영혼의 살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때 혐오표현을 단순한 개인적 욕설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의 욕설은 그 표현의 강도가 높다고 해도 대개 일회적이다.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매우 나쁠 수는 있지만, 휘발성이 있어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그런 식의 감정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는 아주 점잖게 표현된 말도 이러한 의미에서 강력한 사회적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혐오표현이 단순한 욕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혐오표현이 그 집단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특정 소수자 개인을 겨냥해서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다른 소수자 집단 전체에게 미친다. 누구에게 전해 들어도 혐오표현의 해악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혐오표현을 구두로 내뱉는 것보다, 벽보, 전단지, 출판물, 인터넷 게시물의 형태로 표출될 때 그 해악이 더 크다. 그것은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 있음을 '공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치 문양같이 어떤 상징물의 게시 하나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후대에 전승되기도 하고 혐오표현을 일삼는 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적 궁핍 등이 계기가 되어 폭발력을 갖기도 하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포트 척도'(Allport's Scale)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부정적 발언, 소수자에 대한 기피, 고용·학교 등에서의 실제 차별, 소수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 그리고 제노사이드 같은 대량학살/절멸로 이어진다고 한다. 말이 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혐오표현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적 입장은 확고하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조 2항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4조의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한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나 종족의 기원이 다른 인종 또는 인간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 또는 그런 행위에 대한 고무"라는 구절이 혐오표현의 금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상 혐오표현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유럽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인종주의·관용위원회, 베니스 위원회 등 유럽 관련 기구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해 왔다.

세계 각국에서도 혐오표현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로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 미주지역의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그 외의 지역의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일부 주) 등이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다.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을 규율할 차별금지법조차 아직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들로 하여금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에 맞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혐오표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응과 반격조차 가하지 않는다면, 소수자들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차별받으며 살아가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혐오표현을 묵과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2016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1. 앞의 다섯가지 주제를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일 강론을 필요로 하시는 본당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강론단 파견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권주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본당에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매달 엄선한 인권 사안을 중심으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교회와 인권」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 교회와 그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내 최초의 가톨릭 청소년용 인권교재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을 출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인권이야기를 쉽게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시와 삽화를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사회교리를 인용하여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작비에 준하는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권주일 강론 뿐 아니라 본당의 각종 모임 또는 교육, 특강 등에서 인권강의가 필요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02) 777-0641 chrc@hanmail.net





사진 정운
사진 유성범대위

교회와 인권

고권일의 그림이야기


Hell
조선
얼른 고치를 깨고 나와
나비가 되렴~
2015. 12


사생결단
4·16 연대
조위보장하라!
기억교실 보존하라
완전사회 구현하자
온전히개인영하라
세월호
한번 가라앉힌걸 왜 자꾸 꺼내려들어?
김
안
2016.8.23


싸-드만
있으면
안전!
진도 6.5